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1-17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5구합165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redacted]시장
변 론 종 결	2016. 7. 21.
판 결 선 고	2016. 9. 22.

주 문

1. 피고가 2014. 9. 16.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7,860,250원, 농어촌특별세 714,880원, 지방교육세 2,001,2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1.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소장에 부과처분이 2014. 9. 18.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을5, 6에 의하면 이는 오기로 보인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1-17

가. 원고는 2012. 9. 15. [redacted]시 [redacted]구 B 대 182.2㎡ 및 그 지상 주택을 매수하여 잔금을 지급하였고, 2012. 9. 17. 위 토지 및 주택을 영유아보호법 상의 영유아어린이집으로 사용한다는 이유로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원고는 2013. 8. 16. 위 토지 지상에 면적이 289.03㎡인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토지 및 주택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13. 9. 3. 영유아보호법 상의 영유아어린이집으로 사용한다는 이유로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운영하던 C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2013. 12. 21. 원고의 딸인 D에게 임대하고, 2014. 1. 13. 어린이집의 대표자도 D에게 이전한 사실을 확인한 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2년 이상 영유아어린이집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2014. 6. 16.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겠다는 과세예고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7. 21.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경기도지사는 2014. 9. 2. 위 심사청구를 불채택하는 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2014. 9. 16.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격 합계 623,518,2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27,860,250원, 농어촌특별세 714,880원, 지방교육세 2,001,270원 합계 30,576,400원을 부과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2. 17.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8. 28.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5, 을1~3, 을5, 을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1-17

가. 원고의 주장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이 사건 어린이집을 스스로 운영하고 있고,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노임을 받지 못한 인부들이 원고가 대표자로 있는 어린이집에 찾아와 난동을 부림에 따라 어린이집의 대표자만 원고의 딸인 D로 변경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형식적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D로부터 보증금 및 월세를 지급받지 않았다.

(2)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D에게 실제로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영유아어린이집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였는지 여부

㈎ 인정사실

① 원고는 2014. 10. 18. 이 사건 어린이집의 미술전시 및 미술퍼포먼스(체험학습)를 위하여 [redacted]시의 [redacted]공원 야외무대에 대한 사용승인 신청을 하였고, 2014. 11. 27. 학습발표회를 위하여 [redacted]문화재단에 오정아트홀 대관신청을 하였으며, 2015. 7. 24. 동요·동시발표회를 위하여 [redacted]시노동복지회관에 대한 시설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원고는 주식회사 동심으로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의 교육프로그램을 2015. 3.경부터 2016. 2.경까지, 2016. 3.경부터 2017. 2.경까지 각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3. 3. E과 이 사건 어린이집의 F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4. 3. 3. G와 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1-17

사건 어린이집의 H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③ 원고는 2015. 1. 16.경에도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 운영일지에 결재를 하였고, 2014. 8. 26.경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의 교사들과 함께 응급 구조교육을 받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7~1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판단

위 인정사실, 갑15-1~5, 갑16~17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딸인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한 이후에도 이 사건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는 2013. 12. 21.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고, 2014. 1. 13.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도 D에게 이전하였는데, D는 2013. 3.경부터 2015. 8.경까지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교육학 석사과정을 거치고 있었으므로, D가 이 사건 어린이집을 전적으로 운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한 이후에도 이 사건 어린이집의 각종 행사를 위한 시설사용 계약의 당사자로서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어린이집의 교육과정 마련을 위한 가맹계약도 직접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기 이전인 2013. 10. 18.과 2013. 12. 8.경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인터넷 홈페이지에 구인광고를 하면서 연락처에 원고의 휴대전화번호(I)를 기재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한 이후인 2014. 2. 10., 2016. 1. 7., 2016. 2. 3. 구인광고에도 연락처에 원고의 위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한 이후에도 이 사건 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1-17

린이집의 보육교사 채용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가 D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는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공사대금과 관련된 분쟁에 대응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D에게 임대하고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도 D로 변경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임대가 직접 사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취지는 영·유아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에 해택을 주어 보다 많은 어린이집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고 어린이집의 시설 확충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2호에서 규정한 '직접 사용'의 의미는 당해 재산의 용도가 직접 그 본래의 업무에 사용하는 것이면 충분하고, 그 사용 방법이 원고 스스로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거나 혹은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는지 여부는 가리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15039 판결 참조)[한편, 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신설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가 '직접 사용'에 관하여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은 2014. 1. 1. 이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부칙 제1조, 제3조), 2012년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위 신설조항의 의미가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고유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1-17

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2)].

따라서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D에게 임대한 이후 이 사건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D로 하여금 운영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2013. 8. 16. 이후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원고 스스로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도록 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어느모로 보나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임민성

판사 홍윤하

2) 2014. 1. 1. 위 직접 사용에 관한 정의규정의 신설 이후에도 임대방식의 사용방법을 제한하는 조문(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이 다수 존재한다(위 법률 제21조, 제23조, 제40조, 제40조의3, 제47조, 제48조, 제53조 등). 위와 같이 위 직접 사용에 관한 정의규정의 신설 이후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그 감면목적에 따라 임대용부동산을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그 사용방법을 제한하는 규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위 정의규정의 문언이나 이 사건 감면규정에 의하더라도 부동산 소유자가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는 방법으로 고유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1-17

판사 심우승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1-17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와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및 주민세 재산분을 각각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2.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해당 부동산 소유자와 사용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제94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부칙 <법률 제12175호, 2014.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 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끝>